

特許專擔部署의 組織과 運營

特許 專擔部署의 要員養成 및 運營要領

IV. 特許專擔要員 養成

1. 特許專擔要員의 人事管理

特許管理業務는 어느 業務보다도 전문적인 資質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專門要員에 대해서는 人事移動을 삼가하여 當該專門要員이 當該分野에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育成할 수 있는 人事制度를 갖추어야 하며 不必要한 循環勤務制는 止揚되어야 한다. 한편 다른 部署의 幹部나 經營層의 訓練을 위하여 循環勤務가 必要한 때에는 이들 對象要員들을 職務發明管理委員會의 要員으로 위촉하면 그 代替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特許專擔要員의 資格

企業內 特許管理業務의 特殊性에 비추어 特許權利管理의 特許技術管理를 함께 취급해야 되는 特許專擔部署에는 他部署와는 달리 一定한 資格을 갖춘 要員을 배치해야 하며 이 要員들은 特殊專門職要員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特許專擔要員은 권리문제의 관련된 法律知識과 特許技術 및 그에 관한 情報를 分析評價해야 되기 때문에 社會科學 및 自然科學에 대한 폭넓은 知識을 함께 갖춘 우수한 者들이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① 自然科學分野에 대한 專門知識

自然科學分野에도 수많은 專門分野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專門分野 가운데 어느 한 分野만의 專門知識이라도 갖춘자이면 自然科學全般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허문제가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고 있는 限 자연과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필

수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特許專擔要員이 되기 위한 첫째요건은 技術을 이해할 수 있는 資質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다만 特許를 포함하여 工業所有權問題全般을 취급하지 않고 주로 商標와 意匠을 다루는 기업의 특허전담부서 요원에 있어서는 技術問題가 반드시 제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와 의장등 技術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部分은 자연과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기업의 業務範圍와 事業性格에 따라 특허전담요원의 資格要件이 달라질수 있음은 물론이다.

② 工業所有權關係法令을 이해할 수 있는 法律知識

특허관리의 대상은 1次的으로 기술적 창작물이나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갖가지 법률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특허관리에 있어서 必然的으로 요구되는 지식은 法律知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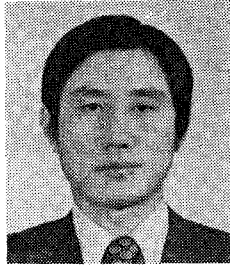
최초의 發明者로부터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會社가 양수하여 회사명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문제와 일단 登錄設定한 특허권을 행사함에 따르는 民事的·刑事的 諸조치를 취함과 관련한 여러가지 節次를 밟는 문제와 특허권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와 特許權의 有效性을 가름하는 各種審判 및 特許訴訟 이룰때면 特許無效審判·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허가 심판·실시허가심판·商標登錄取消審判 및 抗告審判과 이들에 대한 각각의 再審 事件과 상고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取消申請事件과 強制實施權許與申請事件, 特許侵害와 紛爭에 따르는 各種損害償申請訴訟 및 가처분신청사건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전담요원은 법률문제에도 깊은 專門知識이 필요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아니할수 없다.

③ 技術情報管理(蒐集, 加工處理 및 檢索)能力

特許管理의 대상은 技術이기 때문에 특허관리를 함

實務(完)

중심으로



金允培

〈辨理士〉

에 있어서 技術을 도의시할 수는 없으며 또 이 技術은 新規의 바로 창작된 技術이 있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서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創作된 후 散在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버려진 狀態에서 人間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간 技術도 많이 있다.

기업의 특허관리요원은 지구상에 수없이 산재되어 있는 技術정보중 기업경영상 또는 특허관리상 最適의 것이라고 판단되는 技術情報를 適期에 檢索하여 최고 경영자 또는 관련부서에 配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技術中 필요한 技術에 합리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要件을 터득해야 하므로 技術정보관리능력을 갖추어야함은 물론이다.

技術情報 즉 「전달과정에 있는 技術에 관한 知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情報檢索의 各 段階別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 또는 소양이 있어야 한다.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기술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정보의 實需要者 들에게 供給되느냐 실수요자에게 供給傳達되기 前에 정보관리자는 一聯의 정보관리활동을 통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내야 한다. 이를 各 단 계별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情報蒐集의 段階에서, 各國의 특허청 등에서 발행하는 특허공보류 또는 각종특허정보기관에서 발행하는 특허정보의 一次, 二次資料 등은 일정한 분류방식에 의해서 體系있게 특허정보가 供給되기 때문에 특허정보의 분류시스템만을 익히면 별 큰 문제가 없으나 特許關係資料以外的 모든 技術정보는 統一的 또는 體系的으로 분류되지 않고 산만한 狀態로 頒布되기 때문에 이를 蒐集하는 단계에서부터 專門의 知識 또는 技能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書誌學 등 圖書館 關聯學科에 대한 理解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러니와 수시로 발생하는 情

論壇解說

目次

- I. 特許專擔部署의 意義
 - II. 特許專擔部署의 組織과 業務分掌
 - III. 特許專擔部署의 機能
 - IV. 特許專擔要員 養成
 - V. 特許專擔部署의 運營要領
-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報源에 신속히 눈을 들릴 수 있는 "Sense"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知識과 素養은 단행본·정기 간행물·신문 기타의 情報원중 所要의 情報원에 접근하여 企業目的上 必要한 망라적인 모든 정보를 蒐集케 할 수 있는 基礎的인 能力源이 된다.

어느 경우에는 印刷媒體뿐만 아니라 電波媒體에서도 所要의 情報를 求得할 수 있음은 물론 各種 會議나 세미나 또는 工場·研究所 등 施設物을 訪問하거나 特定人物과의 面담을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가 蒐集될 수 있기 때문에 情報원을 발견하고 이에 接近하는 "Sense"는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情報處理의 段階에서, 網羅的으로 蒐集된 정보를 處理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無意味하며 결국 이러한 情報들은 情報관리조직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蒐集된 관계정보는 이후의 용이한 檢索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를 一定한 기준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分類方式에 의하여 분류처리되어야 하고 또한 一般圖書分類制度(K.D.C. 또는 D.D.C)와는 전혀 別個의 개념으로 分類되는 特許分類方式(이는 各國이 다를 뿐더러 國際的으로 通用되게 하기 위하여 따로 제정한 국제분류가 있으나 아직은 各國이 自國固有의 특허분류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分類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이러한 정보는 이후의 기계검색을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전자계산조직을 利用하거나 Micro Film에 담는편이 經濟的인 때가 있다.

물론 기계검색을 위한 情報處理에는 해당 分野에 專門의 知識과 技能을 가진 要員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지만 이러한 一聯의 작업을 조정 리드하기 위해서

특허관리요원은 이와같은 기계검색에 대한 초보적인 知識程度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전자계산조직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 경우는 더욱 바람직하다 아니할 수 없다.

蒐集된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原情報를 一定한 需要를 위해서 가공하여 蓄積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一次情報를 가공하는 일인바 이는 一次情報(즉 原文)의 量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抄錄化하여 量의으로 줄여서 檢索과 利用을 용이하게 할 뿐더러 索引語 또는 書誌的 事項만을 발췌하여 정보를 가공처리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抄錄作成 專門家들에게 맡겨지게 되거나 아니면 기왕에 抄錄으로 작성되었거나 아니면 索引語 또는 書誌的 事項만을 발췌하여 가공한 狀態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특허관리자가 직접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나 특허관리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체계적인 特許管理를 할수 있음은 물론이다.

特許管理者는 때에 따라서 직접 抄錄을 작성하거나 目錄을 作成함은 물론 分類된 情報를 再分類하거나 특정기업의 사업에 알맞게 特殊한 用途를 위하여 再加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發生할 때 이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不合理할 때가 있으므로 특허관리요원은 情報管理業務에 더욱 민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情報의 蓄積段階에 있어서, 수집·가공처리된 정보는 적절히 蓄積되어 있어야만 以後 檢索과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므로 특허관리요원은 一般圖書館管理業務에 관한 상식도 필요함은 물론이다.

넷째, 情報의 檢索段階에 있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蒐集·加工·處理·蓄積된 정보는 궁극적으로 企業活動上의 必要에 의해서 檢索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정보의 검색작업은 정보의 實需要者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보다는 특허관리요원이 代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情報의 검색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情報蒐集時에 과연 所要의 망라적인 모든 정보를 수집했느냐가 問題된 뿐 아니라 蒐集된 情報가 체계적으로 적절히 가공처리되어 蓄積되어 있느냐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상황아래에서 정보검색자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므로 有能한 特許管理者는 적절한 정보검색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情報管理能力은 특허관리요원이 갖추어야 할 첫번째의 資格要件이기도 하다.

④ 外國語 實力

기술정보이기도 한 특허정보는 大部分의 경우 외국 언어로서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관리에 있어서 항상 언어의 장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정보가 그 生産者 또는 情報發行供給者의 모국어에 의해서 표현되고 또 전달되기 때문인 것이다.

기업의 特許管理部署에서 취급하는 정보가 국내에서 發行된 것만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언어문제는 야기될 수 없지만 오늘날과 같이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상황아래에서는 기술정보도 하나의 동일정보권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전세계의 情報供給源을 정보관리의 活動범위로 삼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국내정보만을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경쟁에서 敗함은 물론 국내경쟁에 나설 수도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특허관리자는 갖가지 國語로된 世界各國의 문헌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므로 외국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

⑤ 經營 能力

기업에 있어서의 특허관리는 餘他的 經營관리와는 아주 다른 특이한 대상을 관리의 객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함에는 특수한 경영방법이 필요하다. 즉 특허관리의 대상은 특허에 대한 권리와 특허기술 및 일반기술정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無形으로 有在하며 또 그 價額을 평가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價額의 評價基準도 통일적인 것이 없고 또한 특허권이란 특수한 財産權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財産權의 效力範圍(즉 특허청구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으며 특정한 경우 별도로 財産權의 效力범위를 따로 따로 定해줘야 하기 때문에 有形的 財産을 다루는 일반경영과는 특이한 점이 있으므로 일단한 특허관리를 위해서는 水準以上の 經營能力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3. 特許專擔要員의 選拔基準

특허전담요원은 적절한 資質을 가진 者로 선발하되 他部署와의 순환근무를 지양한다는 대원칙하에 가급적 資源자로 선발해야 할 것이다.

特許專擔要員을 선택함에 앞서 몇가지 前提條件을 검토해 볼 必要가 있는데 우선 企業이 이제까지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여 企業활동을 해 오고 있는지와 아

나면 企劃이나 開發部署 또는 管理部署에 특허전담요원을 둔 경우 기업의 관련부서의 特定한 요원이 特許管理業務를 겸하여 맡아 왔는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既存部署에 특허전담요원을 보강 配置하는 문제와 新設되는 특허전담부서에 특허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인바, 특허전담요원은 前述한 특허전담 요원의 資格要件에 입각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일반적으로 大部分의 기업들이 특허관리요원을 新入社員으로 充當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바람직 하지 못한 인사관리인 것 같다. 왜냐하면 特許問題는 어떤 경우에는 企業의 死活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특허관리업무가 기업측으로 보면 最高級機密에 속하는 사항도 많을 뿐만 아니라 특허관리에 있어서 그 절차가 번잡스러운 것은 그만 두고라도 特許性(特許要件)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 권리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특허침해여부를 가리는 문제 및 實施契約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業務에 대한 분석 평가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은 물론이러니와 기업자체의 입장이나 기업의 경영이나 成長스타일에 익숙한 中견要員이 맡기에 도 사실상 비찬 業務가 바로 특허관리업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特許專擔部署가 신설되는 경우에 有關部署의 中견要員이 책임자로 선택되는 경우에는 신입사원을 특허전담요원으로 선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特許專擔部署를 설치하지 않고 기획부서나 개발부서 또는 관리부서에 特許專擔要員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有關部署의 中견요원을 특허전담요원으로 轉補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허관리 요원을 專擔시켜오면서도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有能한 특허전담요원을 자체내에서 양성해 놓지 못한 것이다. 이는 특허전담요원을 자주 交替하므로써 특허전담요원은 항상 特許業務에 생소할 뿐더러 특허업무의 特殊性에 비추어 특허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전문성을 띤 業務로서 名目上的 전담요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名實相符한 전담요원이 이 업무를 맡아해야 所基의 특허관리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전담요원이 자주 交替되는 理由는 企業內的 인사관리가 無原則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要員 自身도 자기 업무에 대한 장래성이라든가 使命感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요원이 마음놓고 特許管理業務에 전념할 수 있도록 制限여건을 만들

어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심지어 어떤 기업에서는 특허관리업무를 「로테이션」式으로 순환근무를 시키므로써 막중한 業務에 反하여 전담요원을 키워 놓지 못하는 직접적인 原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미루어 특허전담요원은 가급적이면 自願에 의하여 장래성 있는 有能한 要員中에서 선택하되 특허전담요원은 特殊職化하여 자주 交替하지 않도록 할과 아울러 企業의 最高級機密까지도 취급하게 되는 이들에게 장래성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근무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企業이 特許專擔要員을 선택함에는 위와 같이 복합적인 諸要因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同種業界 특허전담부서의 동향까지도 참작하는 적극적인 選拔方式이 必要하다.

4. 特許專擔要員 養成要領

특허관리요원이 맡고 있는 업무는 전문직업무이기 때문에 特許專擔要員의 特許專門要員化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保健職이나 經理, 法務職등에 있어서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듯이 특허관리직도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특허관리요원을 전문직요원으로 確保해야 하나 특허전문요원의 전문적인 양성기관이 없는 現在의 여건으로서는 이를 기업자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特許專擔要員을 양성함에는 기업내에서 대상 요원을 選拔確保한 후 이 要員들을 社內에서 훈련시키든가 아니면 社外의 有關機關에서 訓練養成 시킬 수 있고 既成의 전문가를 社外에서 招빙하는 方案등이 강구될 수 있다.

V. 特許專擔部署의 運營要領

1. 情報流通

관련정보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社內의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그 體系를 單一化하는 情報의 流通책임부서의 역할이 요망됨.

2. 管理

특허등 商標소유권은 일종의 財產權이므로 일반 財產을 다루는 管財部署처럼 철저한 管理部署의 역할이 요망됨.

3. 政策參謀部署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前衛部署이자 企業의 촉각으로서 技術的 財產部門의 政策參謀部署의 능동적인 역할이 요망됨. <完>